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박희승·서영교·윤준병

강훈식 • 홍기원 • 조 국

김준혁 · 위성곤 · 김영호

신영대 · 강유정 · 안태준

정준호 • 이성윤 • 민병덕

이수진 • 박지원 • 김문수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・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.

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,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국고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최근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, 아동수당, 청년 수당, 농어민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에 대하여 임금·보수, 지자체의 공사·용역·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수 없도록 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발행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 1년 1조 2,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 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됨 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,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이 우려되고 있음.

이에 기본소득,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,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(안 제1조, 제15조제1항 및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활성화"를 "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 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·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,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, 장려금,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사랑상	제1조(목적)
품권의 발행과 환전, 운영 등에	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	
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	
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	
하고,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	
경제 <u>활성화</u> 에 기여함을 목적	<u>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</u>
으로 한다.	화와 지역 균형발전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	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지원) ①
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	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	
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	
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	
<u>할 수 있다</u> . < <u>후단 신설></u>	<u>하여야 한다</u> . <u>이 경우 「인구감</u>
	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
	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
	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
	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을 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국가재

<신 설>

<신 설>

②・③ (생략)

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예산요 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하 여야 한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각 지방자 치단체의 전년도 지역사랑상품 권 발행・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,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, 장려금,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<u>⑤</u>・<u>⑥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